Omnibus Flash / November 2020 / No. 02

Omnibus Law - Major Changes to Tax Laws

Omnibus Law –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 p1

1. 국세기본법의 개정 p1

2. 소득세법의 개정 p4

3. 부가세법의 개정 p6

결론 p9

이번 Tax Flash는 그간 PwC가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업데이트로서 최근 서명된 옴니버스 법안 중 세법개정의 주요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버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의 주요 세법이 많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1. 국세기본법 *(Ketentuan Umum Perpajakan,* KUP*)*;
2. 소득세법(The Income Tax Law, ITL);
3. 부가세법(The Value Added Tax, VAT).

상기 세법 개정의 주요사항은 납세자에 대한 패널티 규정 완화, 특정 종류의 소득 비과세(일부 배당과 해외 소득 포함) 적용,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국가별과세(territorial taxation) 개념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부가세법이 납세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의 많은 부분은 후속적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 및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세부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되면 세법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의 Tax Flash 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1. 국세기본법(KUP)의 개정

국세기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납세자의 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방식이 변경된 점 입니다. 동 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무 행정 분야에 있어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변경

옴니버스 법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포함)과 관련하여 재무부금리 (MoF Interest Rate, MIR)의 사용을 도입했습니다. 동 MIR(가산세 종류별 추가 SPREAD 가 가산됨)은 기존 국세기본법에 따라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월별 2%의 가산세 규정을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옴니버스 법은 자진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던 사항을 세무조사시와 동일하게 최대 24 개월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MIR 은 재무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연간 이자율로 표시됩니다. 최종 가산세 이자율은 MIR 에 가산세 항목별로 추가적인 스프레드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MIR 및 가산세 스프레드가 연간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율을 12 로 나누어 매월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된 MIR 이 8 %이고 가산세 항목에 추가되는 스프레드가 10 % 인 경우 적용되는 월 이자율은 1.5 % (18 % / 12)입니다.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MIR 은 해당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산세 발생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스프레드가 MIR 에 합산되어 최종적인 가산세 이자율이 산정됩니다. 아래 표는 이전 법률과 비교하여 옴니버스 법에 의해 변경된 가산세 이자율을 요 약한 내용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산세 종류별로 스프레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No.	규정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행	옴니버스 세제
1	매월 신고 대상 세금에 대한 지연납부 가산세	2%	(MIR+5%)/12
2	세무조사 개시 이후 과세확정통지서 수령 이전에 자진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50% 가산세	(MIR+10%)/12
3	세무조사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 결정 통지서(SKPKB*)에 따른 가산세	2%	(MIR+15%)/12
4	과소납부 세액 결정 통지서(SKPKB) 금액의 지연납부 가산세	2%	MIR/12

*) 과소납부 세액 결정 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

행정벌과금 및 기타 가산세율 개정

상기 언급한 이자율 변경 외에도 국세기본법 상 적용되는 기타 행정벌과금 및 가산세 적용 이자율이 옴니버스 법에 따라 개정됩니다.

조세범죄의 예비증거에 따른 세무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 상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납세자가 조세범죄의 예비증거(*Bukti Permulaan,* "Bukper")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가 미납세액에 대하여 자진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15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동 사건이 조세범죄에 대한 정식 조사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Bukper 세무조사 개시 후, 사건이 정식 조사로 이관되기 전까지 자진수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옴니버스 법은 해당 조항에 따른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Bukper 세무조사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100%로 인하되었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가능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관이 법적인 조사수행에 대해 검사에게 통보하기 이전까지 동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VAT 세무조사에 대한 과소납부 세액결정 통지서(SKPKB)에 대한 행정벌과금

VAT 세무조사로 인한 SKPKB 받은 경우 납세자는 두 가지 유형의 가산세(월별 지연납부 가산세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DGT 는 두 가지 가산세 중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불성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기존 규정에 따르면 DGT 는 부가세 과세사업등록자(*Pengusaha Kena Pajak* / PKP)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의 2 %를 가산세 통지서(*Surat Tagihan Pajak* / STP)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a. 세금계산서(*Faktur Pajak* / FP) 미발행;
b.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c.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불성실;
d. 세금계산서 미신고.

옴니버스 법에 따라 상기 a), b), c)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세 과세표준의 1%로 인하되고, d)의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interest compensation) 관련 개정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이자율

가산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월 이자율은 기존 월 2 %가 아닌 MIR 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별 이자율은 MIR / 12 개월(추가 SPREAD 가 적용되지 않음)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옴니버스 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에도 이자 적용 기간은 모든 경우 24 개월로 제한됩니다(기존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국세환급가산금(Interest compensation) 규정 변경사항

기존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규정 제 27A 조는 새로운 규정 제 27B 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납세자의 조세 이의신청, 조세소송 및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 대한 납세자의 요청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되고 그러한 승인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환급포지션이 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상 환급포지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무조사 종결미팅시에 환급포지션으로 주장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의 취소 및 상환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후속 절차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수령한 환급금은 지급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상환을 위한 STP 발행은 하기에 해당 시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결정(*keputusan* – 통상 DGT 에 의해 결정됨);
- 판결 처분(*putusan* – 통상 조세법원에서 처분됨); 또는
- 납세자에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 된 경우.

상기 사항은 이전에 DGT Circular 에 의해서만 규정되었지만, 동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국세기본법 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과세제척기간(Statutes of Limitations, SoL)에 대한 개정

가산세고지서(STP) 발행 관련 제척기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옴니버스 법은 가산세고지서(STP) 발행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합니다. 가산세고지서(STP) 발행은 과세 납부기한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의 일부 또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5 년

이내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a. 과세결정에 대한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고지서(STP)의 경우 납부포지션을 확정하는 해당 결정(예 : 과소납부 세액결정서(SKPKB) 또는 과소납부 추가세액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 SKPKBT) 또는 과세결정의 변경, 이의신청, 조세소송, 재심청구)에 따른 세금징수 기한까지 발급 가능;
b.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50% 가산세가 부과되는 가산세고지서(STP)는 납세자가 조세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각 결정일로 부터 5 년 이내 발급 가능;
c. 납세자의 조세소송이 기각되어 100% 가산세가 부과되는 가산세고지서(STP)는 해당 조세소송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5 년 이내 발행 가능.

<u>과세제척기간 이후의 세액결정통지서(SKPKB 및 SKPKBT)의 발행</u>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5 년의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DGT 는 납세자가 조세범죄 또는 기타 범죄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SKPKB 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동 예외규정은 조세범죄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납세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DGT 가 SKPKB 발급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세기본법에 따라 DGT 는 납세자가 조세범죄 또는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 년의 일반적인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SKPKBT 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옴니버스 법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SKPKBT 는 부과제척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발급될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 개정

옴니버스 법은 부분적인 국가별 과세 개념과 비과세소득 항목의 확대 등 소득세법의 여러가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의 주요한 사항 중 하나는 특정 배당금 및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완화를 통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자산을 인도네시아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외 과세 대상 정의에 대한 변경 및 국가별 과세 도입

국외 과세 대상(“foreign tax subject”)인 인도네시아인

기존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옴니버스 법은 12 개월의 기간 중 183 일 이상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에 대하여 "국외 과세 대상("foreign tax subject”)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단, 항구적 주거,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과세 대상의 지위 등을 인도네시아 국외에 두고 있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가별 과세 제도

옴니버스 법은 소득세법에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국내 과세 대상이 된 외국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 최초 4 년 동안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별 과세제도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외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인도네시아와 해당 수입의 원천지국간 조세조약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항목의 확대

옴니버스 법은 비과세 대상 항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사로부터 개인이 받은 보험금이 사고, 질병, 사망 또는 장학금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건의 계기보다는 보험 상품의 유형(예: 건강, 사고, 생명, 이중 목적 및 교육 보험)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부분에서 기존 소득세법 조항과 상이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은 옴니버스 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동 분배금은 배당금 정의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Hajj payment

옴니버스 법은 Hajj 관리를 위한 예금 기금 (*Biaya Penyelenggaraan Ibadah Haji*)과 Hajj 재무관리기관(*Badan Pengelola Keuangan Haji*)에서 수령한 Hajj Payment 의 개발 수입을 비과세 대상 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sations, NPOs)

옴니버스 법은 다음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사회 및 종교 기관 분야의 NPOs 가 수령하거나 획득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해당 NPOs 가 관련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NPOs 소득이 최대 4 년 이내에 시설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로 재투자되거나 기부 기금으로 할당되어야 함.

인도네시아인이 수령한 배당금 및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변경

옴니버스 법은 국내 및 국외에서 수령하는 배당금 및 특정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크게 변경하였습니다. 동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배당금 및 특정 국외 소득을 인도네시아에 재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조세 제도를 제공합니다.

내국 배당금의 과세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 및 개인 납세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납세자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에 배당금을 재투자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회사으로부터 받은 모든 배당금은 옴니버스 법 개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25 % 이상 주식 보유 시 비과세 적용되었음).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내국 납세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국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국외 고정사업장(PE)에서 받은 소득;
- 국외에 소재한 회사로 부터 수령한 배당금;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국외(PE 나 해외자회사가 아닌)에서 수령한 사업 소득.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 소득을 특정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 활동에 사용하거나 재투자하여야 합니다.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득의 종류 중 처음 두 항목 경우, 최소 재투자 금액은 세후 이익의 30 %입니다. 국외 PE 에서 수령한 세후소득 및 비상장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세후 소득 기준으로 30 % 미만으로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는 경우 30 % 한도액과 재투자 된 부분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 소득이 이미 인도네시아의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외국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인도네시아에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개정 예정

소득세법 제 26 조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에 해당합니다. 동 원천징수세율은 옴니버스 법 개정으로 인하여 후속적인 정부령 제정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가세법 개정

옴니버스 법 개정 이전의 부가세법은 과세사업등록자(PKP)에게 불합리적이며 사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PKP 가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Input VAT)과 관련하여 동 매입세액이 최종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이 되어 있으나 공제 및 환급을 받는데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PKP 가 적합하게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법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PKP 가 불필요한 부가세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도(delivery)와 관련하여 일부 공급유형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불공제 적용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 적용

생산 이전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적용

기존 부가세법은 생산 전 부가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본재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PKP 만 해당) 하였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생산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자본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가세 매입세액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옴니버스 법은 기존에 PKP 가 생산 이전 단계에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월별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부가세법과 동일하게 PKP 가 특정 기간 내에 상업생산(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및 수출)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상업 생산 개시 기간은 3 년 이내로 옴니버스 법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산업의 PKP 에 대하여는 재무부가 해당기간을 3 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옴니버스 법은 이전 시행령과 유사한 방법으로 DGT 가 공제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KP 등록 이전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

사업자가 PKP 로 등록하기 전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PKP 등록 후 발생하는 부가세 매출세액의 80 %까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발견된 공제받지 아니한 부가세 매입세액

세무조사시 PKP 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월별 신고서상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 미신고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세무조사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결정 통지서(SKP)에 따라 추가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

과세결정 통지서(SKP)에 따라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추가적인 불복을 진행하지 않으며 해당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재화의 부가세 과세대상 인도시점에 대한 개정

옴니버스 법은 기존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도 시점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비과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위탁 재화

옴니버스 법은 과세대상 재화의 인도에 대한 정의에서 위탁 재화와 관련한 재화의 인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 재화의 인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인도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출자(*Inbreng*) 및 기타 회사의 구조 조정

회사가 현물출자(I*nbreng*)로 인하여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활동 목록에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옴니버스 법은 합병, 통합, 확장, 분할, 인수 및 현물출자(옴니버스 세제에 따라 새로 추가됨)에 있어 자산이 양수도 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자가 모두 PKP 인 경우에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의 인도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자 중 어느 한쪽이 PKP 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인이 PKP 가 아닌 경우 양도거래는 여전히 부가세 과세대상 정의에 포함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양도인이 PKP 가 아니므로 징수되지 않음;
- 양도인은 PKP 이나 양수인이 PKP 가 아닌 경우 양도거래는 여전히 부가세 과세대상 정의에 포함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VAT 처리가 적용됨.

부가세 과세 대상에 석탄 포함

옴니버스 법은 석탄을 부가세 면세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석탄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변경

기존 부가세법은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해외 구매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름, 주소, Tax ID 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다음과 같이 해외 구매자의 정보기재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보다 완화하였습니다:

- 국외 과세 대상 개인의 경우 : Tax ID 번호는 Citizen ID(*Nomor Induk Kependudukan*) 또는 여권번호로 대체할 수 있음;
- 국외 과세 대상 법인의 경우 : 회사이름 및 주소만 기재가능(Tax ID 번호 기재조건 삭제)

결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옴니버스 법의 개정에 따른 세법의 개정은 비지니스 및 투자환경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측면에서는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패널티 부과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소득세법은 최근에 개정된 조항과 더불어 수익의 재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측면에서는 오랜기간 협의되어 온 생산 전 단계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및 법인의 비지니스에 많은 부분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옴니버스 법의 개정은 개인 및 법인의 비즈니스 전략, 구조 및 프로세스 변경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PwC 는 이러한 개정과 변화에 있어 고객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 inhyuk.park@pwc.com

박재성 회계사
E: jay.y.park@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Melli Darsa
melli.darsa@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